

부산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가단3186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 18.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D와 피고 사이에 2019. 1. 3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9. 1. 31. 접수 제4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함)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D에 대하여 2015. 3. 20.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2057호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2015. 4. 14. 확정되었다.

나. E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8. 1. 31. D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그 사실을 D에게 통지하였다.

다. D는 자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9. 1. 31.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446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20. 5. 1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카단1257호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5. 26.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¹⁾ ② 원고는 2021. 5. 21.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2020. 5. 14.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별지

1) 피신청인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은 2020. 5. 14. 이 법원 2020카단52195호 접수되었다가, 2020카합10301호, 2020카단52252호로 순차 재배당되었다.